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91호

2016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지적측량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

- 1. 시행일 : 2016. 1. 1.
- 2. 2016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기준점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삼각점 측 량	GNSS	1 점		518,000	530,000	545,000
	T / S	1 점		936,000	959,000	986,000
	• 지적삼각보조점을 위성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GNS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를 적용 하며,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T/S 지적삼각점측량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지적도근점 측 량	GNSS	1 점 당		91,000	93,000	112,000
	T / S	배 각 법	1 점	97,000	99,000	119,000
		방위각법	1 점	89,000	91,000	111,000

2)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중목별	기 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5,000원 이하	5,001원 15,000원	15,001원 30,000원	30,001원 100,000원	100,001원 1,000,000원	1,000,001원 5,000,000원	5,000,001원 10,00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67,000	203,000	239,000	311,000	358,000	382,000	40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11,000	256,000	301,000	391,000	451,000	482,000	512,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61,000	195,000	230,000	299,000	345,000	368,000	391,000
경계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55,000	309,000	364,000	473,000	546,000	582,000	61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18,000	387,000	455,000	591,000	682,000	728,000	773,000
	수치	1필지	300	220,000	267,000	314,000	408,000	471,000	502,000	534,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50,000	183,000	215,000	279,000	322,000	344,000	365,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190,000	230,000	271,000	352,000	406,000	434,000	461,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45,000	176,000	207,000	269,000	310,000	331,000	352,000
도시계획선 명시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255,000	309,000	364,000	473,000	546,000	582,000	619,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18,000	387,000	455,000	591,000	682,000	728,000	773,000
	수치	1필지	300	220,000	267,000	314,000	408,000	471,000	502,000	534,000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기본단가는 토지개별공시지가 기본구간(15,001원 ~ 30,000원)의 단가를 말한다.										

(금액단위 : 원)

구분 중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64,000	513,000	576,000
		임야	1 필지	5,000	459,000	610,000	682,000
	수 치		1 필지	1,500	350,000	492,000	556,000
등록전환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438,000	615,000	696,000
	수 치		1 필지	1,500	454,000	638,000	718,000
축척변경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1,500	314,000	445,000	502,000
		임야	1 필지	5,000	395,000	525,000	588,000
	수 치		1 필지	1,500	334,000	476,000	535,000
지적불부합지 조사측량	도해	토지	1 필지 (분할후)	1,500	222,000	293,000	330,000
		임야	1 필지 (분할후)	5,000	280,000	347,000	387,000

택지개발예정지적 좌표도 작성측량	지구계점		1점	207,000	269,000	308,000	
	지구내		1m ²	427.8	459.4	497.1	
	- 본 단가의 기준면적은 1지구 100,000m²를 기준하였으며,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에는 단가산출 품셈기준에 의한 체감계수를 곱하여 각각 합산한 품으로 단가를 산출한다. - 지구계점에 대한 예정지적좌표도 작성은 도해측량(평판측량 또는 전자평판측량) 방법으로 분할,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등의 측량과정을 거친 후,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작업상 필요한 도해측량과 지적기준점측량은 별도의 수수료를 계상한다. - 지구(공구)계 좌표산출 수수료는 지적현황측량(수치) 수수료를 적용하되 지역구분계수를 반영하며, 1필지내 추가되는 점마다 50%를 감면 적용한다.						
분할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6,000	61,000	66,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9,000	68,000	77,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54,000	70,000	76,000
현황내업품	도해	토지	1필지 (분할후)	1,500	44,000	58,000	63,000
		임야	1필지 (분할후)	5,000	56,000	65,000	73,000
	수 치		1필지 (분할후)	1,500	48,000	64,000	69,000

3) 지적확정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확정측량	토지구획정리 확정측량	1㎡	834.0	854.3	923.8
	경지구획정리 확정측량		66.2	67.8	69.9
	토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349.9	358.1	369.0
	경지구획정리 신규등록 확정측량		66.2	67.8	69.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 라목의 농공단지조성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단가의 70%를 적용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2호, 제13호에 따라 실시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건설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수수료는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 지적확정측량 측량지구 면적이 토지구획정리는 10,000㎡이하, 경지구획정리는 30,000㎡ 이하인 경우, 각각 10,000㎡와 30,000㎡에 해당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4) 지적재조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재조사측량	수 치	1필지	299,000	345,000	387,000
	지적재조사측량 수수료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단가의 5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도해	토지	1도곽	92,000	94,000
		임야		92,000	94,000
	수 치			64,000	66,000

나. 국토정보관리

1) 국토정보조사측량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다목적지적측량	-	1m ²	435.1	445.2	458.8
침수흔적지 조사측량	-	1m ²	62.2	63.7	66.1
	- 본 단가는 측량지구의 면적을 100,000m²를 기준하였으며, 1,000,000m²까지는 기준면적의 단가를 적용하고, 1,000,000m² 초과 시마다 기본단가에 10%를 누적 체감한 계수를 곱한 단가를 적용하며, 측량지구의 면적이 30,000m²이하인 경우에는 30,000m²의 면적으로 한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2) 국토정보조사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토 지 구 분	단 위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지 적 삼 각 점	1점	295,000	301,000	311,000
	지 적 도 근 점	1점	15,000	15,000	16,000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를 감면하여 적용한다.				
지적이용 현황조사	토 지 · 수 치	1필지	27,000	39,000	42,000
	임 야		35,000	47,000	51,000

3) 국토정보 품질관리

(금액단위 : 원)

구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구 분		단 위	기 준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지적(임야)도 전 산 화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86,000	190,000	196,000
		임 야			204,000	208,000	215,000
측량결과도 전 산 화	좌표독취 (스캐닝+벡터라이징)		1 장	지적도크기	39,000	40,000	41,000
	• 스캐닝에 의한 전산파일작성 수수료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적용한다.						
연속지적도 작성업무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48,000	49,000	50,000
		임 야			61,000	63,000	65,000
	수 치				46,000	47,000	48,000
연속지적도 품질개선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31,000	32,000	33,000
		임 야			38,000	39,000	40,000
	수 치				10,000	10,000	10,000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24,000	127,000	130,000
		임 야			155,000	158,000	163,000
	수 치				82,000	84,000	86,000
	• 본 단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작성 또는 지형도면(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포함)을 작성할 경우에 적용한다.						
도 면 작 성	도 해	토 지	1 장	지적도크기	10,000	10,000	10,000
		임 야			13,000	14,000	14,000
	• 본 단가는 지적도 1장을 기준하였으며, 기준규격의 1/2 이하 도면작성 시는 본 품에 의한 도면작성수수료 단가의 50%를 적용한다.						
조 서 작 성	전 필 조 서		1장	A4(10횡)	3,000	3,000	3,000

3.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4. 경계점표지대는 지적측량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음
5.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정별 품셈기준에서 규정한 가격대별 지가계수를 군지역의 고시단가에 곱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가계수를 적용하지 않거나 연속지·집단지 측량 종목은 지역별(군·시·구) 구분계수를 적용한 단가를 사용한다.
6. 2016 지적측량수수료표 등은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홈페이지 온나라알리미/공지사항란에 파일형태로 게재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onnara.go.kr>)
7. 첨부: 2016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 기준 및 수수료표 각 1부. 끝.